

변경대비표

1. 대상약관

- 수익증권저축약관

2. 시행일 : 2016년 6월 7일

3.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개정약관 적용 여부 : 적용

4. 변경 대비표

변경 전	변경 후	비 고
<p>제 6 조(저축금의 납입) ① 저축자는 현금이나 즉시 받을 수 있는 수표 어음 등으로 저축금을 납입(계좌송금 및 계좌대체를 포함한다)할 수 있다.</p> <p>② 저축금으로 납입한 수표.어음 등이 지급 거절된 경우에는 저축금의 납입을 취소하며, 회사는 증권의 권리보전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저축자</p>	<p>제 6 조(저축금의 납입) ① 저축자는 현금이나 즉시 받을 수 있는 수표 어음 등으로 저축금을 납입(계좌송금 및 계좌대체를 포함한다)할 수 있다.</p> <p>② 저축금으로 납입한 수표.어음 등이 지급 거절된 경우에는 저축금의 납입을 취소하며, 회사는 증권의 권리보전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저축자</p>	

<p>또는 계좌송금의뢰인에게 지급 거절된 수표·어음 등을 반환한다.</p> <p>③ 판매회사는 저축자로부터 납입 받은 저축금을 수익증권 매입 전까지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 하여야 하며, 해당 저축금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p> <p>④ 회사는 전항의 저축금에 대해 저축자에게 고지한 지급기준에 따른 저축금 이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p> <p>⑤ 회사는 저축금 이용료 지급기준을 저축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 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 또한 회사가 저축금 이용료 지급기준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변경내용을 변경예정일 전에 이항 앞의 문장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고객에게 안내하고 제 9 조제 3 항에 따른 월간 매매내역 등의 통지 시에 함께 저축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p>	<p>또는 계좌송금의뢰인에게 지급 거절된 수표·어음 등을 반환한다.</p> <p>③ 판매회사는 저축자로부터 납입 받은 저축금을 수익증권 매입 전까지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 하여야 하며, 해당 저축금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p> <p>④ 회사는 전항의 저축금에 대해 저축자에게 고지한 지급기준에 따른 저축금 이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p> <p>⑤ 고객은 회사로부터 지급받는 저축금 이용료의 지급기준을 영업점, 인터넷 홈페이지 (금융상품물>> 펀드>> 펀드자료실>> 공지사항>> 투자자예탁금운영 및 이용료 지급기준(2010.6.4)),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p> <p>⑥ 회사는 운용수익, 예금자 보험료, 감독부담금 등을 감안하여 저축금 이용료를 합리적으로 산정하고, 투자자예치금 이용료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변동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이를 반영한다.</p> <p>⑦ 고객은 제 6 항에 따라 저축금 이용료의 지급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제 5 항의 방법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고객에게 불리한 저축금 이용료 지급기준 변경에 대하여 고객이 그 내용을 저축금 이용료 변경</p>	
--	---	--

	<p>전에 자신이 지정한 전자우편 또는 휴대폰 문자서비스(SMS, MMS 등) 등의 방법으로 통하여 안내받기를 원하는 경우 회사는 그 방법으로 사전에 알려준다.</p> <p>⑧ 회사는 저축금 이용료의 지급기준이 변경되는 경우 제 9 조제 3 항에 따른 월간 매매내역 등을 통지할 때 그 변경내용을 함께 고객에게 알려준다.</p>	
<p>제 15 조(사고, 변경사항의 신고 등) ① 저축자가 저축통장, 신고인감을 분실, 멸실, 도난, 훼손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사에 신고하여야 한다.</p> <p>② 저축자는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회사에 신고한 사항이 변경되거나 인감(또는 서명감), 비밀번호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회사에 신고하여야 한다.</p> <p>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신고의 효력은 회사가 저축자로부터 분실, 멸실, 도난, 훼손 및 변경의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발생하며, 신고의 효력발생 전에 생긴 저축자의 손해에 대하여 회사는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p>	<p>제 15 조(사고, 변경사항의 신고 등)</p> <p>① 저축자가 저축통장, 신고인감을 분실, 멸실, 도난, 훼손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사에 신고하여야 한다.</p> <p>② 저축자는 성명, 주소, 전화번호 등 회사에 신고한 사항이 변경되거나 인감(또는 서명감), 비밀번호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회사에 신고하여야 한다.</p> <p>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신고의 효력은 회사가 저축자로부터 분실, 멸실, 도난, 훼손 및 변경 의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발생하며, 회사는 고객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신고지연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p>	

<p>제 17 조(통지의 방법) ① 회사는 저축자가 신고한 주소 또는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저축자에게 서면 또는 전화 등 저축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에 의하여 통지한다.</p> <p>② 저축자에 대한 통지의 효력은 도달한 때로부터 발생한다. 다만,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 없이 통지가 주소이전, 부재 기타 저축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연락하거나 도착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통상 도착하여야 하는 때에 도착된 것으로 본다.</p>	<p>제 17 조(통지의 방법) ① 회사는 저축자가 신고한 주소 또는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저축자에게 서면 또는 전화 등 저축자와 사전에 합의한 방법에 의하여 통지한다.</p> <p>② 저축자에 대한 통지의 효력은 도달한 때로부터 발생한다. 다만,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 없이 통지가 주소이전 등 저축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연락하거나 도착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통상 도착하여야 하는 때에 도착된 것으로 본다.</p>	
<p>제 20 조(약관의 변경 등) ① 회사는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내용을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에 저축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마련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p> <p>(추가)</p>	<p>제 20 조(약관의 변경 등) ① 회사는 약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내용을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20일전에 고객이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의 영업점에 갖추어 두거나 인터넷 홈페이지, 온라인 거래를 위한 컴퓨터 화면,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통신매체를 통하여 게시한다.</p> <p>다만, 자본시장법 등 관계법령 또는 거래소 업무규정의 제 개정에 따른 제도변경 등으로 약관이 변경되는 경우로서 본문에 따라 안내하기가 어려운 급박하고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내용을 앞의 문장과 같은 방법으로 개정약관의 시행일전에 게시한다.</p>	

② ~ ⑤ <생략>	② ~ ⑤ <생략><기존과 동일>	
<p>제 21 조(양도 및 질권설정) 저축자는 회사의 동의를 얻어 저축금 및 수익증권을 양도하거나 질권(채무자가 돈을 갚을 때까지 채권자가 담보물을 보유할 수 있고,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때는 그 담보물을 사용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을 설정할 수 있다.</p>	<p>제 21 조(양도 및 질권설정) 저축자는 회사의 동의를 얻어 저축금 및 수익증권을 양도하거나 질권(채무자가 돈을 갚을 때까지 채권자가 담보물을 보유할 수 있고,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을 때는 그 담보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을 설정할 수 있다.</p>	
(신설)	<부칙> 개정규정은 2016년 6월 7일부터 시행한다.	